

11월 6일 (Fri) 13시30분 발표

## 부산시 코로나19 현황

총 확진자 (누계)	추가확진자 (오늘)	완치	현재 치료중	사망
594명	1명	546명	35명	13명

※ 부산시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하는 확진자 수가 다른 이유는 집계방식과 발표기준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  
 - (집계방식) 질병관리청은 최초 검사 기관 기준으로 확진자를 집계, 부산시는 부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확진자를 기준으로 집계  
 - (발표기준시점) 질병관리청은 당일 0시 (전일 24시) 기준으로 발표, 부산시는 당일 기준 수시 발표

**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** -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(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관리 등),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m<sup>2</sup>당 1명으로 인원 제한

\* 월,수,금 13시 30분 온라인 브리핑합니다.

- 사회적 거리두기
- 확진자 이동경로
- 코로나19 발생현황
- 코로나19 지원정책
- 인터넷 방역단 / 클린존
- 의료지원 / 심리상담
- 시민 행동수칙
- 공지사항
- 코로나19 Q & A

### 사회적 거리두기

사회적 거리두기 (10.12. ~ 11.6. 까지)

## 부산광역시 거리두기 1단계 (2020.10.12.~ 11.6. 까지)

생활 속 거리두기로  
안녕한 부산을 만들어 갑시다



구분		거리두기 1단계 (10.12. ~ 11.6. 까지)		
전국 공통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(집합·모임·행사) 허용 * 대규모 인원(100명 이상)이 모이는 전시회·박람회·축제·대규모 콘서트·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㎡ 당 1명으로 인원 제한</li> <li>◎ (스포츠 행사) 관중 수 제한(최대 30%)</li> <li>◎ (국공립시설) 운영 가능, 인원 제한(최대 50%)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* 박물관, 미술관, 공연장, 도서관, 고궁, 공원, 경마·경륜·경정 등</li> <li>◎ (사회복지이용시설, 어린이집) 운영 가능 *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 방역 계획 수립하여 운영</li> <li>◎ (기업, 기관) 유연·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(공공), 유연·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(민간)</li> </ul>		
고위험시설	집합 제한 (핵심방역 수칙준수의 무)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 vertical-align: top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</li> <li>③ 단란주점</li> <li>⑤ 헌팅포차</li> <li>⑦ 뷔페</li> <li>⑨ 실내 스탠딩공연장</li> <li>⑪ 유통물류센터</li> </ul> </td> <td style="width: 50%; vertical-align: top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② 콜라텍</li> <li>④ 감성주점</li> <li>⑥ 대형학원(300인 이상)</li> <li>⑧ 노래연습장</li> <li>⑩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</li> <li>⑫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</li> </ul> </td> </tr> </table> <p>※ ① ~ ⑤ 4㎡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                 ※ ⑫ 8㎡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</li> <li>③ 단란주점</li> <li>⑤ 헌팅포차</li> <li>⑦ 뷔페</li> <li>⑨ 실내 스탠딩공연장</li> <li>⑪ 유통물류센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② 콜라텍</li> <li>④ 감성주점</li> <li>⑥ 대형학원(300인 이상)</li> <li>⑧ 노래연습장</li> <li>⑩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</li> <li>⑫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</li> <li>③ 단란주점</li> <li>⑤ 헌팅포차</li> <li>⑦ 뷔페</li> <li>⑨ 실내 스탠딩공연장</li> <li>⑪ 유통물류센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② 콜라텍</li> <li>④ 감성주점</li> <li>⑥ 대형학원(300인 이상)</li> <li>⑧ 노래연습장</li> <li>⑩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</li> <li>⑫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</li> </ul>			
다중이용시설	집합 제한 (필수방역 수칙준수)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 vertical-align: top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일반음식점/휴게음식점/과자점</li> <li>③ 놀이공원</li> <li>⑤ 영화관</li> <li>⑦ 학원(300인 미만)</li> <li>⑨ 스터디카페</li> <li>⑪ 종교시설</li> <li>⑬ 목욕탕/사우나</li> <li>⑮ 멀티방/DVD방</li> </ul> </td> <td style="width: 50%; vertical-align: top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② 워터파크</li> <li>④ 공연장</li> <li>⑥ PC방</li> <li>⑧ 직업훈련기관</li> <li>⑩ 오락실, 만화카페</li> <li>⑫ 실내결혼식장</li> <li>⑬ 실내체육시설</li> <li>⑮ 장례식장</li> </ul> </td> </tr> </table> <p>※ (필수방역수칙) 시설 내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부 작성, 이용자 간 거리두기, 주기적 환기·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일반음식점/휴게음식점/과자점</li> <li>③ 놀이공원</li> <li>⑤ 영화관</li> <li>⑦ 학원(300인 미만)</li> <li>⑨ 스터디카페</li> <li>⑪ 종교시설</li> <li>⑬ 목욕탕/사우나</li> <li>⑮ 멀티방/DVD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② 워터파크</li> <li>④ 공연장</li> <li>⑥ PC방</li> <li>⑧ 직업훈련기관</li> <li>⑩ 오락실, 만화카페</li> <li>⑫ 실내결혼식장</li> <li>⑬ 실내체육시설</li> <li>⑮ 장례식장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일반음식점/휴게음식점/과자점</li> <li>③ 놀이공원</li> <li>⑤ 영화관</li> <li>⑦ 학원(300인 미만)</li> <li>⑨ 스터디카페</li> <li>⑪ 종교시설</li> <li>⑬ 목욕탕/사우나</li> <li>⑮ 멀티방/DVD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② 워터파크</li> <li>④ 공연장</li> <li>⑥ PC방</li> <li>⑧ 직업훈련기관</li> <li>⑩ 오락실, 만화카페</li> <li>⑫ 실내결혼식장</li> <li>⑬ 실내체육시설</li> <li>⑮ 장례식장</li> </ul>			

구분	거리 두기 1 단계 (10.12. ~ 11.6. 까지)
행정명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(QR코드) 도입(해운항만과-6207) : 8.19. ~ 별도 해제 시까지</li> <li>◎ 마스크 착용 의무화(공고2020-319, 재난대응과) : 8.22. ~ 별도 해제 시까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, 버스·지하철, 집회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(11.13.~)</li> </ul> </li> <li>◎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(건강정책과-25023) : 8.25. ~ 별도 해제 시까지</li> <li>◎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(공고2020-321, 버스운영과) : 8.25. ~ 별도 해제 시까지</li> <li>◎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,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(공고2020-339, 소상공인지원담당관) : 9. 4. ~ 별도 해제 시까지</li> </ul>

## 핵심방역수칙 (공통)

사업주 · 종사자	이용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전자출입명부 설치</li> <li>▪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</li> </ul> </li> <li>◎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</li> <li>◎ 사업주 마스크 착용, 종사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</li> <li>◎ 1일 1회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 작성)</li> <li>◎ 방역자 지정</li> <li>◎ 영업 전/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 작성)</li> <li>◎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li>◎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◎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전자출입명부 인증</li> <li>▪ 수기명부 작성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</li> </ul> </li> <li>◎ 증상 확인 협조, 발열·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</li> <li>◎ 마스크 착용(음식물 섭취 시 제외)</li> <li>◎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/ul>



#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

## 1

### 공통사항

(필수방역수칙) 시설내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부작성, 이용자간 거리두기, 주기적 환기소독 등 의무화  
 (집합·모임·행사) 허용 (스포츠 행사) 관중 수 제한(최대 30%)  
 (실내외 국공립시설) 운영가능, 인원제한(50%) (사회복지이용시설, 어린이집) 운영  
 (기업, 기관) 공공·유연·재택근무 등으로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 
 민간·유연·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

## 2

### 위험시설 (집합금지⇒필수방역수칙준수의무화) 다중이용시설(필수방역수칙준수의무화)

-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    | 2. 콜라텍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단란주점             | 4. 감성주점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헌팅포차             | 6. 목욕탕·사우나                    |
| 7. 학원, 스터디카페        | 8. 뷔페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노래연습장            | 10.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           |
| 11. 실내 스탠딩공연장       | 12. 유통물류센터                    |
| 13.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 | 14. PC방, 멀티방, DVD방, 오락실, 만화카페 |
| 15. 종교시설            | 16. 공연장, 영화관                  |
| 17. 워터파크, 놀이공원      | 18. 직업훈련기관                    |
| 19. 예식장             | 20. 장례식장                      |
21.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: 8㎡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

#### <부산시 행정명령>

-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(QR코드) 도입(해운항만과-6207) : 8.19.~별도 해제시까지
- 마스크 착용 의무화(공고2020-319, 재난대응과) : 8.22.~별도 해제시까지
-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(건강정책과-25023) : 8.25.~별도 해제시까지
-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(공고2020-321, 버스운영과) : 8.25.~별도 해제시까지
-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,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(공고2020-339, 소상공인지원담당관) : 9. 4.~별도 해제시까지

#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(공통)



## 사업주·종사자 수칙

- ⊕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
  - 전자출입명부 설치
 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
- ⊕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
- ⊕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
- ⊕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
- ⊕ 방역관리자 지정
- ⊕ 영업 전/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작성)  
\*문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
- ⊕ 시설 내 이용자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- ⊕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
- ⊕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신고면적 4㎡당 1명)

## 이용자 수칙

- ⊕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
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- ⊕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
- ⊕ 마스크 착용(음식물 섭취 시 제외)
- ⊕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